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0
------	------

제출일자 : 2024. 2. 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4. 1. 4. ~ 2024. 1. 24.)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나.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조항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기관: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아트홀”을 “금나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 기타”를 “재해나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장준석
연 락 처	2627 - 1445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조(위치) 아트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아트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대관) 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징수) 아트홀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①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연의 경우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
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4.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5. 삭제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계약 체결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중 아트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시행일: 2024. 5. 17.]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